

# (가칭)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443
----------	------

제출년월일 : 2020년 4월 3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 1. 제안이유

- 가. (가칭)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아동 접근성과 안전 중심으로 설치하고 있는 중소규모 우리동네키움센터의 기능을 보완하여 모든 아동들에게 보다 넓고 좋은 공간에서 다양한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아이돌봄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는 협력망을 구축하여 초등돌봄 질을 견인하고자 운영하는 시설임
- 나. (가칭)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여성의 경제력 향상 및 성평등한 돌봄 환경조성을 위해 건립하는 ‘스페이스살림’내 설치하는 것으로, 초등학생 눈높이의 프로젝트 기획 운영 및 돌봄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서울시 ‘온마을 아이돌봄 추진지원단’ 과 긴밀한 업무 연계협력을 통한 종사자 역량강화, 돌봄자원 연계망 구축 등 업무를 체계적, 전문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 다. 이에, 2019년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위탁기간 3년으로 (가칭)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가 보건복지부를 통해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 시설로 선정되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의거 위탁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시설개요

- 시설명 : (가칭)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 소재지 : 동작구 대방동 340-4번지 외 3필지
- 규 모 : 스페이스살림 내 596.2 $m^2$ (1층 485.3 $m^2$ , 2층 110.9 $m^2$ )
- 준공일 : 2020. 9.(예정)
- 공간구성(안)

구 분		면적( $m^2$ )	용 도
지상	2층	110.9	사무공간, 놀이치료·특화 가족지원 등 집중 치유공간
	1층	485.3	프로젝트기반배움 가변형 교실, 다목적 놀이공간, 전문인력교육장 겸용

### 나. 위탁내용

- 위탁사무 : 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위탁기간 : 2020. 7월 ~ 2025. 6월(5년)
- 위탁유형 : 시설위탁
-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조직 및 운영(안) : 3팀, 16명 (센터장 1, 종사자 15)

<b>센터장(1)</b>
운영총괄

<b>기획총무팀(6)</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조정 및 운영 총괄</li> <li>· 조직·인사, 예산·결산·지출, 총무</li> <li>· 콘텐츠 홍보 및 전산시스템 관리</li> <li>· 시설안전관리 및 차량관리·운영</li> </ul>

<b>돌봄운영팀(6)</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콘텐츠 구성 및 운영</li> <li>· 문·예·체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li> <li>· 돌봄서비스 제공 기획 및 운영</li> </ul>

<b>돌봄자원연계팀(3)</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li> <li>· 돌봄자원 연계 및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li> <li>· 중소규모 키움센터 교육 지원</li> </ul>

○ 위탁사무 내용

- 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관리 및 시설·물품 관리
- 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
- 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돌봄서비스 기획 및 운영
- 권역 내 아이돌봄 자원 연계 및 인적·물적 연계기반 마련
- 권역 내 아이돌봄 관계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 온마을아이돌봄추진지원단과 업무 연계·협력 및 지원
- 권역 내 중소 아이돌봄 시설 서비스 개선 및 이용 지원
- 권역 내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및 교육지원
- 제2호 거점형키움센터 콘텐츠 홍보 및 전산시스템 관리
-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서울시 초등돌봄 사업추진 관련 업무 협조

○ '20년 소요예산 : 1,219백만원(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다.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 「온마을 아이돌봄체계 구축 기본계획」 (시장방침 제33호, '19.3.6.)
-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설치·운영계획」 (아이돌봄담당관-5588, '19.4.29.)
- 「2020년 거점형키움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아이돌봄담당관-10676('19.8.23.)
- 2019년 제6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조직담당관11978, '19.9.19.)
- 제1,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제290회 정례회,'19.12.16.)
-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변경계획」 (아이돌봄담당관-2365, '20.2.14.)
- 2020년 제2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조직담당관-4002, '20. 3.25.)

## 라. 민간위탁 필요성

- 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권역 내 초등학생 대상 문화·놀이·예술 체험 프로그램 기획·운영, 돌봄서비스 제공, 지역사회와 수평적 연계를 통한 아이돌봄 협력망 구축 및 인적·물적 아이돌봄자원 연계 등 기능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시설임
- 특히 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여성의 경제력 향상 및 성평등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시 대표공간인 스페이스살림 내 설치하는 것으로,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내 운영중인 '온마을 아이돌봄 추진지원단'과 긴밀한 업무 연계·협력, 권역 내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및 교육지원 등 기능을 유연하게 수행하기 위해 민간자원을 활용한 업무수행이 필요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18, 2009.7.30, 2014.5.14>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아이돌봄담당관 초등거점조성팀 이다림 (☎ 2133-7152)